

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 여름철 성수기 맞아 올바른 탐방 문화 정착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 국립공원공단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 인원 4,200여 명 투입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고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된 장소 외 야영·주차·취사·흡연 행위, △셋길 등 금지구역 출입, △오물이나 폐기물 무단 투기, △산 정상 등에서 음주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단속에 4,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특히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계곡 내에도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과 주요 거점 지역(탐방로, 정상부, 한시적 허용지역 등)에 설치된 깃발과 현수막을 활용해 현장에서 집중단속 사항을 안내하고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도 관련 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여름 성수기(7~8월) 기간 동안 국립공원 단속건수는 총 2,405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주차(741건), △셋길 등 금지된 장소 출입(661건), △불법취사(376건), △오물투기(196건) 순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관련 단속사진.
 2. 사무소별 집중단속 기간 및 투입인력 현황.
 3. 과태료 부과 기준.
 4. 최근 3년간 위반행위 적발 현황. 끝.

담당 부서	국립공원공단 환경협력처	책임자	부 장	김종희 (033-769-9500)
		담당자	계 장	권순혁 (033-769-9504)





설명: 셋길(비법정탐방로) 출입 단속



설명: 지정된 장소 밖 주차행위 단속

붙임 2**공원별 성수기 기간 및 투입인력 현황**

공원명	성수기 기간		투입인력 (연인원)
계	19개 공원		4,239명
지리산	2025. 7. 12. ~ 8. 18.	38일	450명
계룡산	2025. 7. 5. ~ 8. 17.	44일	352명
한려해상	2025. 7. 13. ~ 8. 18.	37일	180명
설악산	2025. 7. 13. ~ 8. 18.	37일	300명
속리산	2024. 7. 14. ~ 8. 31.	49일	210명
내장산	2024. 7. 13. ~ 8. 18.	37일	420명
가야산	2025. 7. 19. ~ 8. 24.	37일	160명
덕유산	2025. 7. 21. ~ 8. 17.	27일	60명
오대산	2025. 7. 13. ~ 8. 18.	37일	185명
주왕산	2025. 7. 19. ~ 8. 17.	30일	150명
태안해안	2025. 7. 5. ~ 8. 17.	44일	86명
다도해해상	2025. 7. 13. ~ 8. 18.	37일	145명
치악산	2025. 7. 19. ~ 8. 17.	30일	320명
월악산	2025. 7. 18. ~ 8. 17.	31일	209명
북한산	2025. 7. 12. ~ 8. 17.	37일	280명
월출산	2025. 7. 4. ~ 8. 24.	52일	208명
변산반도	2025. 7. 13. ~ 8. 18.	37일	96명
무등산	2025. 7. 12. ~ 8. 31.	51일	204명
태백산	2025. 7. 18. ~ 8. 24.	38일	224명

※ 경주, 소백산, 팔공산은 봄·가을 성수기에 해당

붙임 3

과태료부과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2호	100	150	200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4호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100	150	200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50	75	100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1호	20	30	50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3항	10	10	10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취사행위), 제11호(오물투기) 또는 제12호(외래동물 놓아주는 행위, 외래식물을 심는 행위)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3항	10	10	10
아. 법 제27조제1항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5호	60	100	200
자. 법 제27조제1항10호를 위반하여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3항	10	10	10
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2호	20	30	50
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6호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50	100	150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60	100	200
타.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6호의2	50	100	200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법 제86조제4항	5	5	5
하.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6조제2항제3호	20	30	50

